



# 소중한 나, 아름다운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

## 연명의료결정제도

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(연명의료결정법)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

연명의료결정제도는 **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**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,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**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고** 있습니다.



#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



## 심폐소생술

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 
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



## 혈액투석

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 
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



## 항암제 투여

암을 축소, 억제,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



## 인공호흡기 착용

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 
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



## 체외생명유지술

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유지를 도와주는  
치료로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 
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는 방법



## 수혈

수혈은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서,  
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 
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



## 혈압 상승제 투여

쇼크, 중증 저혈압,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

## 기타

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

※ 단,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, 물 공급,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.

**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는  
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 
남겨놓을 수 있습니다.**

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**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**을 방문하셔야 합니다.  
본인확인을 위하여 **신분증**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[www.lst.go.kr](http://www.lst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